

2021 - 183

() ()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89.3.21)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-44호(2012.3.12.)로 결정(변경)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)을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4월 15일
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 취지

-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44호(2012.3.12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, 2020년 산업통산자원부의 “협업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사업”으로 선정된 수서동 730번지에 대해 서울시-강남구의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시설(사회복지시설)을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로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.

I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
 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 2. 도시기반시설 결정(변경) 조서
 ■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			(㎡)			(m)	(㎡)		
		(~)	995	13·4	-	7,144	125,523	2017-135 (2017.3.9)	-
		(~)	995	13·4	-	7,144	125,523	2017-135 (2017.3.9)	- : () - 4 ~ 1 - : - L = 92.9m - B = 12.4m - H = 39.5m ~ 62.4m (65.3m ~ 88.2m)

■ 도시계획시설(철도)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- : 4 ~ 1 - L = 92.9m - B = 12.4m - H = 39.5m ~ 62.4m (65.3m ~ 88.2m)	• 730	

■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				(㎡)				
			730	5,949.5	5,949.5	-	480 (09.12.3)	

■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		• ,

■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				(㎡)				
			730	-	5,949.5	5,949.5	-	- : 4 ~ 1 - L = 92.9m - B = 12.4m - H = 39.5m ~ 62.4m (65.3m ~ 88.2m)

■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 건폐율·용적률 및 높이 결정(변경) 조서

730	60%	150%	4	1

■ 도시계획시설(연구시설)에 관한 결정(변경) 사유서

		• AI ()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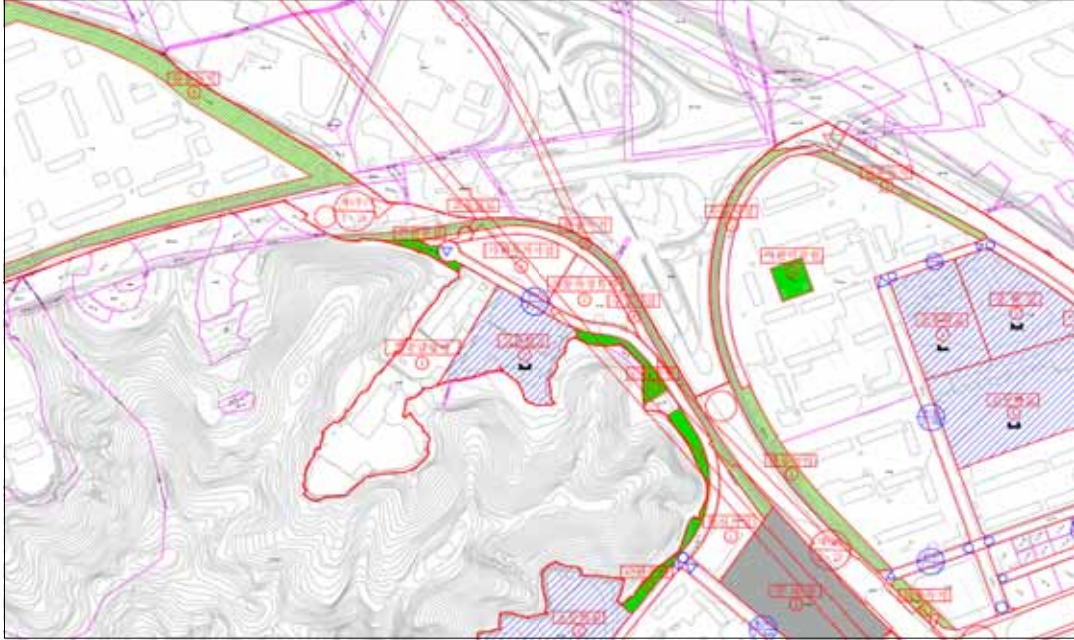
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: 변경없음

Ⅲ. 관계도면 : 붙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Ⅳ.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(☎02-2133-8399)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13)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.

-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 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 - 기정



-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 - 변경

